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19가합511951 판결 [보증금 청구 등의 소]

전 문

원고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동국, 남은지

피고1. C공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영헌

2. D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조용석

변론 종결2021. 6. 9.

판결 선고2021. 7. 14.

주 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5.부터 2019. 3. 18.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D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공제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들에게, 피고 C공제조합은 301,055,851원, 1) 피고 D 주식회사는 40,4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0. 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 하도급계약의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 등

1) 원고들은 공동수급체[지분율 원고 A 주식회사 51%, 원고 B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E 주식회사, 이하 '원고 E'라고만 하고, 회사명의 경우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49%]로서 2014. 12. 30.경 발주자인 서울특별시와 F공사(이하 '이 사건 전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총공사부기금액 10,948,951,490원, 총차 준공일자 2017. 2. 19., 1차 수 공사 계약금액 6,500,000,000원, 1차수 공사기간 2015. 1. 20.경부터 2016. 1. 19.경까지로 정하여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최초 도급계약과 이후 체결된 차수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원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2015. 4. 30. 주식회사 G(이하 'G'라고만 한다)와 이 사건 전체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801,000,000원(이하 '이 사건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공사기간 2015. 5. 1.부터 2017. 2. 19.까지, 지체상금율 계약금액의 0.1%로 정하여 G에게 하도급 주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공사의 발주자 서울특별시, 공동수급인 원고들, 하수급인 G는 2015. 5.경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G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G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직접노무비에 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라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4) 이 사건 하도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건설업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원고들과 G는 건설 공사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2조(지급보증 등)

⑧ G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제3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원고들은 보증기관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33조(선급금)

① 원고들은 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급금을 G에게 지급한다.

② 원고들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때는 원고들이 받은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G에게 지급한다.

⑥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⑦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

선급금 정산액 =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

⑧ G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서를 원고들에게 제출한다.

제38조(계약 해제·해지)

① 원고들 또는 G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들 또는 G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사업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원고들 또는 G가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 회생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원고들 또는 G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원고들 또는 G가 이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G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 G는 2015. 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기사항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특기사항 이행각서

1. 계약자 일반 준수 사항 : 이 특기사항이행각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문서에 대해서는 이 각서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3) 계약금액

(5) 대금지급조건: 관기성에 따름

6) 공사의 변경·중지

④ 도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해서 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액 지급한다.

7) 공사도중 원고들의 승인 없이 중단 또는 지연할 경우 원고들은 G와 합의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하고, 계약 해지시 공정의 완성을 위한 G의 특허부분사용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하며, G의 시공량을 원고들이 정산하여 완성 공정의 70%를 G에게 지급하고 잔여 30%는 G가 상실한다.

계약해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① 공정 지연 및 인원 동원 능력 부족시

② 노임 체불로 인한 작업원과 불미스러운 일 발생시

9) 공사대금은 발주처 직불 처리한다.

4. 시공특이사항

8) 부대토목공사 공사기간은 2015. 5. 1. ~ 2016. 10. 30.까지로 한다.

9) 건축구조물 공사기간은 2015. 8. 1. ~ 2016. 1. 30.까지로 한다.

나. 계약이행보증계약의 체결

1) G는 2015. 5. 11.경 피고 C공제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들, 보증금액 380,100,000원, 보증기간 2015. 4. 30.부터 2017. 2. 19.까지로 정하여 피고 조합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G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계약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편입된 계약보증약관(이하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계약보증약관

제1조(보증책임)

피고 조합은 계약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G)가 앞면 기재 계약(이 사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그 책임 있는 사유로 상대방(이하 보증채권자라 합니다,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의무 또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서 정한 보증내용과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 및 약관에 따라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

제3조(보증사고)

① 보증사고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을 말합니다.

제6조(보상범위)

① 피고 조합이 지급하는 금액은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으로 합니다.

② 실제 손해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1.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
2. 채무자가 이미 이행한 계약 중 계약 내용 기타 지시서에 위배된 시공으로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하여 지출했거나 지출할 금액. 다만 기성검사 시 이미 발생한 하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7조(보증금의 지급기한)

① 피고 조합은 보증채권자의 보증금 청구문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채권자의 심사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제출된 심사자료에 대해 정당한
의의가 있어 소명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지연일수 및 소명에 소요된 일수는 제외하기로 합니다.

제11조(면책조항)

① 피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 경우에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보증사고

6.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체상금 약정액 및 보증채권자의 대지급금(채무자와 계약한
노무자에 대한 노임, 자재업자의 자재대금, 장비업자에 대한 장비대금 등) 반환 채무

다. 원고들의 1, 2차 공사 선급금 지급 및 선급금보증계약의 체결

1) 서울특별시, 원고들, G는 이 사건 원도급계약의 차수별 계약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1차
공사(공사기간 2015. 1. 20.부터 2015. 12. 20.까지, 이하 '1차 공사'라 한다)와 2차 공사(2015.
12. 21.부터 2016. 8. 31.까지, 이하 '2차 공사'라 한다)로 나누어 진행하기로 하였다.

2) G는 2015. 5. 및 8.경 원고들에게 1차 공사 선급금 지급을 신청하면서 "선금은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으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용내역서를 귀 사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선급금각서(이하 '이 사건
선급금각서'라 한다)와 피고 조합이 발행한 선급금보증서 등을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G에게 1차 공사
선급금으로 2015. 6. 2.경 650,000,000원, 2015. 9. 9.경 200,000,000원 합계
8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G는 2016. 5. 4.경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2차 공사 선급금
200,000,000원에 관하여 피보험자 원고들, 보험가입금액 200,000,000원, 보험기간 2016. 5.
3.부터 2017. 2. 19.까지로 정하여 G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들이 반환받아야 할 선금을 보험증권 및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선급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른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편입된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이행(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

제6조(보상하는 손해)

피고 회사는 채무자인 계약자(G)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채권자인 피보험자(원고들)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7조(보험금 지급액)

① 피고 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은 당해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에서 주계약의 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주계약에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의 지급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10조(계약후 알릴 의무)

①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피고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4.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고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7조(보험금의 청구)

①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
2. 신분증
3. 보험증권 또는 그 사본
4.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

5. 회사가 요구하는 그 밖의 서류

② 피고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 드립니다.

5) 원고들은 2016. 5. 7. 및 2016. 5. 13.경 G의 신청에 따라 2차 공사 선급금 합계 200,000,000원을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와 원고들의 하도급대금 등 지급

1) 서울특별시는 G에게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1차 공사 기성공사대금 931,195,700원, 1차 공사 노무비 438,804,300원, 2015. 12.경부터 2016. 8.경까지 2차 공사 노무비 1,686,265,020원 합계 3,056,265,020원(= 931,195,700원 + 438,804,300원 + 1,686,265,02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들은 G에게 앞서 본 1차 공사 선급금 850,000,000원, 2차 공사 선급금 200,000,000원을 지급한 이외에 G의 신청에 따라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510,221,334원을 이 사건 공사의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H, I 등 20개 재하수급업체에 직접지급(339,146,334원)	A	2015. 10. 5.	203,942,651
E	2015. 10. 7.	135,203,683	
2016년 7월 자재비 직접지급	E	2016. 7. 22.	90,000,000
2016년 9월 자재비 직접지급(40,375,000원)	A	2016. 9. 9.	20,591,250
E	2016. 10. 4.	19,783,750	
영구배수시설 관련 직접지급	A	2016. 9. 30.	5,500,000
크레인 비용 직접지급(14,740,000원)	A	2016. 10. 5.	7,517,400
E	2016. 10. 25.	7,222,600	
펌프카 비용 직접지급(20,460,000원)	A	2016. 10. 19.	10,434,600
E	2016. 10. 25.	10,025,400	
합계	510,221,334		

마. G의 장비 및 자재대금 미지급과 이 사건 공사 지연 등

1) G는 2015. 5.경부터 9.경까지 사이에 H, I 등 20개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재하수급업체들이 서울특별시 민원을 제기하고 작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

2) 원고들은 G에게 2015. 9.경 선급금 사용내역서의 제출을 수차례 요구하였고, 2015. 9. 15., 2015. 9. 24.경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발주처 및 당사로 많은 민원 발생, 1개월 째 공사 진행되지 않아 1차분 준공 공기부족으로 지체보상금 예상됨"을 알리면서 선급금 사용내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G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더하여 G의 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 J이 2015. 8. 및 11.경 G의 이 사건 하도급대금채권을 가압류하는 등의 사유로 G가 서울특별시로부터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의 요청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5. 10. 5. 및 2015. 10. 7.경 20개의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장비 및 자재대금 등 합계 339,146,334원을 직접 지급하였다.

3) G는 2015. 10.경부터 2016. 2.경까지 사이에도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서울특별시에 민원이 계속 제기되었고, 이 사건 전체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이하 '관리기술자'라고만 한다)는 원고들에게 2016. 3. 17.경 "당 현장의 공사대금지급 관련해서 장비사용대금, 잡자재 대금 등이 체불되어 공사 중단 등의 사태로 흘러가 공기지연 우려가 있으니 하도급업체의 출력인원, 각종 대금지급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고 향후 하도급 관리방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6. 4. 5.경 "2016. 2. 18.경 공기지연으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함을 요청하였으나 현시점에도 건축공정 진행 속도가 너무 부진하여 후속공정인 기계, 통신, 전기설비 등의 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므로 공정관리를 충실히 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4) 이에 원고들은 G에게 위 관리기술자의 각 공문을 첨부하여 2016. 3. 17.경 "공사대금(2015년 10월 ~ 2016년 2월) 미지급되어 서울시 및 K관리단으로 많은 민원 발생 서울시 및 K단으로부터 대책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 받은 실정이므로, 회의에 참석하여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2016. 4. 6.경 "골조공사가 당초 계획과 달리 지하1층 골조공사와 나머지 기초작업으로 상당기간 지체되고 있고, 건설관리사업단으로부터 골조공사

공정지연으로 후속 공정에 차질이 발생되어 공정관리 촉구를 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공정을 만회할 수 있는 대책을 2016. 4. 13.까지 회신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5) G는 2016. 4. 15.경 원고들에게 추가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을 1,042,814,551원 증액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실정보고(이하 '이 사건 실정보고'라 한다) 공문을 보냈고, 같은 날 G 소속 골조공사 현장대리인과 목수 11명이 형틀작업 중 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하였다.

6) 원고들은 2016. 4. 18.경 G에게 "하도급 자재 및 장비대금이 지급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여 2016. 1.경 2차분 선급금을 받아 처리할 것을 수차례 지시하였으나 선급금 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아 선급금 지급이 되지 않는 실정이므로, 선급금 보증서를 조속히 발급하여 미지급 자재 및 장비대금을 지급하고, 지연된 공기를 만회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고, G는 2016. 5. 4.경에야 피고 회사로부터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들에게 제출하였으며, 원고들은 G의 신청에 따라 2차 공사 선급금 합계 200,000,000원을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직접지급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7) 원고들은 2016. 5. 9.경 G에게 "2016년 3월~5월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중지로 인하여 전체 공정율이 지연되어 발주처 및 K관리단으로부터 부진공정 만회 대책 요청이 공문이 접수되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제출하여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 서울특별시는 2016. 5. 13.경 원고들과 G에게 이 사건 전체 공사가 부진하여 2차 공사(2015. 12. 21. ~ 2016. 8. 31.)의 준공이 어려워 지체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불가피한 실정이고, 2017. 2. 19.까지 건물 완공이 불가하여 긴급회의 개최를 알리는 공문을 보냈다.

8) 관리기술자는 2016. 5. 31.경 원고들에게 "G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대리인의 불성실한 공사로 기성공정이 예정공정보다 현저히 부진(현재공정율 : 약 30%)하고, 축열조 우수 콘크리트타설 부위 등 구조체 품질저하가 우려되며, 또한 안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미흡"하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하고, "관리기술자(원도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원고들은 2016. 6. 2.경 G에게 위 관리기술자의 공문을 첨부하여 "G의 철근콘크리트공사 현장대리인이 사업단과 원청사의 작업지시에 불응하고 불성실한 공사로 공정율 40% 이하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장대리인을 조속히 교체하고 지연된 공정을 만회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9) G는 사업포기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여 2016. 6. 8.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다.

10) 한편 원고들은 서울특별시에 G의 이 사건 실정보고를 전달하였고, 2016. 7.경 G에게 이 사건 전체 공사의 K관리단에서 수량 및 내역을 검토 중임을 알리면서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670,000,000원 증액하고, 2차 공사의 준공일을 당초 2016. 8. 31.에서 2016. 9. 10.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서 초안(이하 '2016. 7.경 변경계약서 초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회신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G의 이 사건 실정보고를 승인하지 아니하고, G도 적자가 크다는 이유 등으로 위 금액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변경계약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1) 이 사건 공사는 당초 2차 공사 준공일인 2016. 8. 31. 및 2016. 7.경 변경계약서 초안에 기재된 2016. 9. 10.까지 완성되지 못하였다.

바. 원고들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통지 및 보증금 지급청구

1) 원고들은 2016. 9. 29.경 G에게 G가 선급금을 유용하는 등으로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장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수차례 공사를 중단하는 등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G의 폐업신고에 따라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G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들은 2016. 10. 27.경 피고들에게 G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10. 28.경 원고들에게 보상심사자료를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0 내지 18, 20 내지 23, 27 내지 47, 51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G는 선급금 유용 등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장비 및 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수차례 공사가 중단되게 하는 등 예정된 공사기간 내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고, 폐업신고에 따라 2016. 6. 8.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도 없게 됨으로써, 이에 원고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G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보증계약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 ① G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퇴거하지 않아 원고들이 잔여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던 기간(2016. 9. 29.부터 2016. 10. 7.까지)인 9일 동안의 지체상금 35,497,351원과 ② 원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 2016년 10, 11, 12월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 1,032,600,300원에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 79.82%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인 767,041,800원[= $3,801,000,000원 \times (1 - 0.7982)$]을 공제한 원고들의 실제 손해액 265,558,500원2) (= $1,032,600,300원 - 767,041,800원$) 합계 301,055,851원(= ① 35,497,351원 + ② 265,558,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선급금보증금으로 40,400,000원[= 보증대상 선급금 200,000,000원 - 선급금 정산액 159,600,000원(= $200,000,000원 \times$ 기성고율 79.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2016. 9. 29.경 G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른 해지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 제2항 제4호는 "G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을 거부하거나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원고들은 G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 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를 시정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 이 사건 이행각서는 "공사도중 원고들의 승인 없이 중단 또는 지연할 경우 원고들은 G와 합의 없이 본 계약을 해약한다."라고 정하고, 계약해지 적용대상으로 "① 공정 지연 및 인원 동원 능력 부족시, ② 노임 체불로 인한 작업원과 불미스러운 일 발생시"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제38조 제2항 제4호, 이 사건 이행각서에 따라 G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로 2016. 9. 29.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3조 제6항은 "선급금은 계약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제8항은 "G는 선급금 사용 완료 후 그 사용내역을 원고들에게 제출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G는 원고들에게 "선금은 자재확보 등 당해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하지 않겠으며, 선금전액을 사용한 후에는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 사용내역을 귀 사에 제출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이 사건 선급금각서를 제출하였다.

② G는 2015. 6.경부터 2016. 2.경까지 원고들로부터 1차 공사 선급금 850,000,000원, 서울특별시로부터 1차 공사 기성공사대금 931,195,700원, 1차 공사 노무비 438,804,300원을 각 지급받았음에도 재하수급업체들에게 장비 및 자재대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들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선급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③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 사건 공사 중 건축구조물 공사기간을 2015. 8. 1.부터 2016. 1. 30.까지로 정하였는데, G의 재하수급업체들에 대한 장비 및 자재대금 등 체불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이 사건 공사가 여러 차례 중단되거나 지연되어 2016. 1. 30.까지 건축구조물 공사가 완성되지 못하였다.

④ 나아가 G는 2016. 4. 15.경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추가공사를 이유로 공사대금 1,042,814,551원 증액을 요청하면서,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관리기술자의 지시에 불응하여 작업을 중단하거나 현장을 철수하는 등 불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 관리기술자로부터 현장대리인 교체 요청을 받았다.

⑤ 이후 G는 사업포기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여 2016. 6. 8. 건설업 등록이 말소되었고, 이 사건 공사는 2차 공사 준공일로 정한 2016. 8. 31.까지도 완성되지 못하였다.

⑥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G가 원고들의 귀책사유 없이 시공을 지연하여 인도일자 내에 공사목적물의 인도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사건 이행각서에서 계약해지사유로 정한 "공사도중 원고들의 승인 없이 중단 또는 지연할 경우", "① 공정 지연 및 인원 동원 능력 부족시, ② 노임 체불로 인한 작업원과 불미스러운 일 발생시"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G에게 수차례 재하수급업체에 대한 체불과 이 사건 공사의 지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G가 2016. 4. 1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공사대금 1,042,814,551원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2조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계약변경이 필요하고, 이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들과 G는 상호 협의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고, 계약의 변경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고들과 G는 협의하여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3개월이 지난 2016. 7.경 턱없이 부족한 금액인 670,000,000원을 제시하여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된 것이므로, 이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이행각서는 "이 사건 이행각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타문서에 대해서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의한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도급자의 지시에 의하여 하도급자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해서 도급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증액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원고들은 G가 제출한 이 사건 실정보고를 발주자인 서울특별시에 전달하였으나, 서울특별시가 이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이 G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대금이 1,042,814,551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서울특별시와 원고들은 G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3,801,000,000원을 초과하여 4,616,486,354원(= 서울특별시 기성공사대금 및 노무비 3,056,265,020원 + 원고들 선급금 1,050,000,000원 + 원고들의 재하수급업체에 대한 직접지급 금액 510,221,334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못하였다거나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해지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 제1항 제2호는 "G가 감독관청으로부터 공사업 등록 말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G는 사업포기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여 2016. 6. 8.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G가 폐업신고 및 건설업 등록 말소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원고들의 해지 의사표시로 2016. 9. 29.경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건설업 등록이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 그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G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2019. 4. 30. 법률 제16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2항은 "건설업 등록이 폐업신고에 따라 말소된 경우 건설업자가 하수급인인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및 수급인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6항은 "수급인은 해당 하수급인으로부터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통지를 받거나 처분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 지나는 날까지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 제6항 및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G의 폐업신고 및 건설업 등록 말소를 이유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G는 사업포기를 이유로 폐업신고를 하여 건설업 등록이 말소된 것이어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조합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사고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G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의

보증기간 내인 2016. 9. 29.경 해지되었으므로, 이는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권자가 보증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조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따라 보증채권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증금액 이내에서 보증사고로 인하여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보증책임 여부

1) 지체상금 청구 부분(35,497,351원)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6. 9. 30.경부터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퇴거하지 않아 원고들이 2016. 9. 29.부터 2016. 10. 7.까지 9일 동안 잔여공사에 착수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11조 제1항 제6호는 "보증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지체상금 약정액"에 대하여 피고 조합은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조합은 이 사건 계약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잔여공사 이행으로 추가로 지출한 비용 청구 부분(265,558,500원) 당초의 시공 회사가 공사를 중단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이 그 미시공 부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 다른 방법으로 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고 그 비용이 당초 시공 회사와 약정한 공사대금보다 증가되는 경우라면 증가된 공사비용 중 합리적인 범위 내의 비용은 시공 회사의 공사도급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0다3188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6, 41 내지 4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이후 2016년 10, 11, 12월경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영노무비 939,430,330원, L 주식회사에 대한 크레인 임대료 64,020,000원, M(상호 N)에 대한 펌프카 임대료 29,150,000원 합계 1,032,600,300원 상당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잔여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이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G의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들이 수행한 공사의 범위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범위 중 G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과 일치하고, 증액된 공사비가 G의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재비 상승 또는 인건비 증가로 발생하였다는 점이 추가적으로 입증되어야만 위 공사비용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지출한 비용은 직영노무비, 크레인, 펌프카 임대료인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이 79.82%이고, G의 이 사건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자재비가 상승하였거나 인건비 증가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들이 수행한 공사의 범위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의 범위 중 G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과 일치한다는 점에 관하여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032,600,300원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 79.82%를 기준으로 이 사건 하도급대금 중 잔여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인 767,041,800원을 공제한 265,558,500원이 이 사건 계약보증약관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G가 이행하지 아니한 나머지 계약을 이행하는데 소요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금액"에 해당하여 원고들이 265,558,5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G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2016. 9. 29.경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반환받아야 할 선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G는 2016. 4. 15.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실정보고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의 증액을 요청하였고, 원고들은 2016. 7.경 변경계약서 초안을 작성하여 일부 증액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므로, 이러한 공사대금의 변경 내용은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 제10조 제1, 3항에 따라 추가공사 및 공사대금 변경 사유를 피고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계약이행보증보험계약의 보통약관에서 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승인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의 변경과 더불어 보험계약의 실효사유로 정하고 있는 '주계약의 내용상 중대한 변경'이라 함은, 그 규정의 내용과 취지 및 효과 등에 비추어,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보험사고 발생의 위험이 높아져 보험자의 책임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와 같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액수의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 제10조 제1항 제4호는 "이 계약을 체결한 후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생긴 경우 G 또는 원고들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피고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G 또는 원고들이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피고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피고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라고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G 사이에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이행각서 등에 의하면 원고들이 G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가 추가로 시공한 공사대금이 1,042,814,551원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G의 추가공사 여부가 피고 회사의 보증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거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보증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33조 제7항은 선급금은 기성부분의 대가를 지급할 때마다 "선급금액 ×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 ÷ 계약금액)"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서울특별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서울특별시는 2016. 2.경 1차 공사의 준공검사에 따라 G에게 준공 기성금을 지급하였고, G가 2016. 2.경까지 이 사건 하도급대금으로 서울특별시와 원고들로부터 합계 2,559,146,334원(= 1차 공사 기성공사대금 931,195,700원 + 1차 공사 노무비 438,804,300원 + 1차 공사 선급금 850,000,000원 + 재하수급업체에 대한 직접지급 금액 339,146,334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기성고율은 67.3%(= 2,559,146,334원 ÷ 3,801,000,000원 × 100, 소수점 첫째 자리 미만 버림)인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G의 재하수급업체들에 대한 장비 및 자재대금 체불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2차 공사 준공일인 2016. 8. 31.까지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G에게 2차 공사에 관하여는 노무비만 지급하였을 뿐 기성검사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9. 30. 기준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공정률은 67.991%에 불과하므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율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79.8%를 초과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③ 위 2016. 2.경 당시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인 2,559,146,334원을 바탕으로 2차 공사 선급금을 정산하면, 선급금 정산액은 134,656,476원[= 200,000,000원 × (2,559,146,334원 ÷ 3,801,000,000원), 원 미만 버림]이 되고, G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은 2차 공사 선급금에서 위 선급금 정산액을 공제한 65,343,524원(= 200,000,000원 - 134,656,476원)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G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은 위 지급금액 대비 기성고율 67.3% 기준으로 계산한 65,343,524원과 원고들이 해지 당시 기성고율이라고 주장하면서 79.8% 기준으로 계산한 40,400,000원 사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보증사인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위 65,343,524원보다 적은 범위 내에서 기성고율 79.8%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구하는 선급금 40,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G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 3,801,000,000원을 초과하여

4,677,300,0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을 4,677,300,020원으로 보면, G가 원고들에게 반환해야 할 선급금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서울특별시와 원고들은 G에게 이 사건 하도급대금 3,801,000,000원을 초과하여 4,616,486,354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는 G의 재하수급업체들에 대한 장비 및 자재대금 체불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고, 2차 공사 준공일인 2016. 8. 31.까지 완성되지 못하였으며, 서울특별시는 G에게 2차 공사에 관하여는 노무비만 지급하였을 뿐 기성검사에 따른 기성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6. 9. 30. 기준 이 사건 전체 공사의 공정률은 67.991%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G에게 지급된 하도급대금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초과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하도급계약 해지 당시 기성부분의 대가상당액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선급금보증금으로 4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6. 10. 28.경에서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5.3)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2019. 3. 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 피고 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홍진표

판사김주현

판사구하경

1)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금액이

301,055,881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2의 나.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는 301,055,851원에 대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2면의 265,558,530원은 265,558,500원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선급금보증약관 제17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2항은 "피고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금 청구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증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2016. 10. 27.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선급금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2016. 10. 28.경 원고들에게 보상심사자료를 요청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16. 10. 28.경 무렵 보상심사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서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한 2016. 10. 28.경으로부터 7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6. 11. 5.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